

방 위 사 업 청 과 그 소 속 기 관 직 제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2024. 00. 00.

법제처 심사 전

방 위 사 업 청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인 미래전력사업본부에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한국형전투기사업단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고, 한국형전투기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4명(고위공무원단 1명, 4급 1명, 5급 1명, 7급 1명) 및 한국형잠수함사업단에 두는 한시정원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각각 2년 연장하며,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을 방위사업청으로 이체하여 배정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인력을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활용정원제 운영계획에 따라 국정과제·정책현안 등의 추진을 위한 인력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방위사업청의 정원 4명(5급 1명, 6급 1명, 7급 1명, 9급 1명)과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정원 6명(5급 3명, 6급 2명, 7급 1명)을 각각 감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4. 00. 00. 공포·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효율적인 조직 및 인력 운영을 위하여 방위사업청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명칭 및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행정안전부, 기재부, 법제처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4. 0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국방과학기술혁신 및 핵심기술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제도개선

제10조5항 제18호 및 제1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방위산업기술 수출 허가 관련 기술보호 분야 업무 지원

19. 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 지원

제12조제1항 중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기반전력사업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을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 계약팀장”을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며,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을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을 “지상공통전력 운영계약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 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을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전력운영사업 조달품목 중 사업팀도 조달 필요 품목.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으로 하고, 제2호부터 제7호까지 중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 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을 각각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을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 까지 중 “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을 각각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과 제9항의 “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공통품목”을 각각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을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을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며, “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장”을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을 “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전력운영사업 조달품목 중 사업팀도 조달 필요 품목.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 중 “전력운영사업”을 “전력운영사업,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으로 각각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장”을 “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제1호부터 제9호 중 “미래전력사업본부 내”를 각각 “미래전력사업본부의”로 한다.

별표1 중 총계 “402”를 “399”로 하고, 일반직 계 “401”을 “398”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1”을 “130”으로 하며,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5”를 “114”로 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1”을 “7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업서기보·농업서기보·해양수산서기보·항공서기보·시설서기보·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1의2 중 총계 “405”를 “402”로 하고, 일반직 계 “404”를 “401”로 하며,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을 “8”로 하고,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35”를 “134”로 하며,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3”을 “112”로 하고,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71”을 “7

0”으로 하며,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10”을 “9”로 한다.

별표2 중 총계 “365”를 “361”로 하고, 일반직 계 “365”를 “361”로 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을 “4”로 하고,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9”를 “98”로 하며,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1”을 “120”으로 하고,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8”을 “57”로 한다.

별표2의2 중 총계 “366”을 “362”로 하고, 일반직 계 “366”을 “362”로 하며, 부이사관 ·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7”을 “4”로 하고, 행정사무관 · 통계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해양수산사무관 · 보건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1”을 “100”으로 하며, 행정주사 · 세무주사 · 관세주사 · 통계주사 · 공업주사 · 농업주사 · 해양수산주사 · 항공주사 · 시설주사 · 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9”를 “118”로 하고, 행정주사보 · 세무주사보 · 관세주사보 · 통계주사보 · 사서주사보 · 공업주사보 · 농업주사보 · 해양수산주사

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9”를 “58”로 한다.

별표3 중 총계 “344”를 “341”로 하고, 일반직 계 “344”를 “341”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8”을 “86”으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6”을 “115”로 한다.

별표3의2 중 총계 “345”를 “342”로 하고, 일반직 계 “345”를 “342”로 하며,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9”를 “87”로 하고,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4”를 “113”으로 한다.

별표5의 “존속기한: 2024년 12월 31일”을 각각 “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로 한다.

별표2의3, 별표2의4, 별표2의5, 별표2의6, 별표3의3과 별표3의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원에 관한 특례) ①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2와 별표2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31일까지는 별표2의3과 별표2의4를, 2026년 2월 28일까지는 별표2의5와 별표2의6을 적용한다.

②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에 관하여는 별표 3과 별표3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28년 2월 29일까지는 별표3의3과 별표3의4를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 ② (생 략) ③ 기술정책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8. (생 략) 9.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에 따른 국방연구개발사업 추 진과 관련한 제도 개선	제10조(국방기술보호국)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 1. ~ 8. (현행과 같음) 9. <u>국방과학기술혁신 및 핵심기술 연구개발 분야에 관한 제도 개선</u>
④ (생 략) ⑤ 기술보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 장한다. 1. ~ 17. (생 략) <u><신 설></u> <u><신 설></u>	④ (현행과 같음) ⑤ ----- ----- 1. ~ 17. (현행과 같음) 18. <u>방위산업기술 수출 허가 관련 기술 보호 분야 업무 지원</u> 19. <u>방위산업기술 보호를 위한 기술 및 기술개발 지원</u>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 조직) ① 기반전력사업지원부에 기반전력 사업총괄팀 · <u>기반전력사업지상공 통전력운영계약팀 · 기반전력사업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 · 기반전 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 기반전 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 기반전력 사업지상공통원가팀 · 기반전력사</u>	제12조(기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 조직) ① ----- ----- <u>지상공통전력운 영계약팀 ·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 팀</u> ----- ----- ----- -----

② _____

-----지상

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

④ 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장-----

1. _____

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의 집행	----- -----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전력운영사업 조달품목 중 사업팀도 조달 필요 품목.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2.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2.-----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3.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3.-----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4.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4.-----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5.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5.-----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6.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6.-----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7. <u>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u> 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7. ----- -----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
⑤ <u>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u> 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⑤ <u>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장</u> ----- ----- -----
1. <u>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u> 에 대한 조달집행계획의 수립 및 집행	1.-----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
2. <u>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u> 에 대한 조달 판단, 공고, 원가산정의뢰, 입찰 및 계약 업무	2.-----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
3. <u>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u> 에 대한 수의계약 가격의 협상	3.-----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
4. <u>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u> 에 대한 입찰 적격심사 대상품목의 선정 검토 및 심사	4.-----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

5.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 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 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계약품목에 대한 하도급 승인	5.-----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 통품목----- -----
6.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 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 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의 신규 또는 국산대체 품목에 대 한 구매가능 판단자료의 제공	6.-----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 통품목----- -----
7.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력운 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방 위력개선사업 중 각 부의 공통품목 에 관한 계약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 건의	7.-----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 통품목----- -----
⑥ ~ ⑦ (생 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장 은 기동사업부·화력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선사업, 지상 및 공통 전력 관련 전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공통 품목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분장한다.	⑧ ----- ----- -----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
⑨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장 은 함정사업부·항공기사업부 및 헬기사업부 소관 분야의 방위력개 선사업, 해상 및 공중 전력 관련 전 력운영사업 및 기반전력사업본부 내 각 부의 공통품목에 관하여 제8	⑨ ----- ----- ----- -----과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

항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미래전력사업지원부에 미래전력사업총괄팀 · <u>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u> · <u>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u> · <u>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u> · <u>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u> 및 <u>미래전력사업원가팀</u>을 둔다. ② 미래전력사업총괄팀장 및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장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 수석전문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u>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u>은 부이사관 ·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u>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장</u> · <u>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장</u> 및 <u>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u>은 과학기술서기관 · 서기관 또는 영관급 장교로 보한다. ③ (생략) ④ <u>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장</u>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전력운영사업(각 군에서 요청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국제부품 · 장비 계약 관련 기획 · 계획의 수립	----- 제17조(미래전력사업지원부의 하부조직) ① ----- -----<u>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u> · <u>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u>----- ----- ----- ② ----- ----- ----- ----- <u>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u>----- ----- -----<u>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u>----- ----- ----- ----- ----- ③ (현행과 같음) ④ <u>국제확정전력운영계약팀장</u>----- ----- 1. ----- ----- -----, 방위력개선사업 중 공통품목(<u>전력운영사업 조달품목 중 사업</u>
--	---

	<u>팀도 조달 필요 품목. 이하 이 조에</u> <u>서 같다.)</u>----- -----
2.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 체결에 관한 업무	2. -----, <u>방위력개선사업</u> <u>중 공통품목</u> -----
3.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계약에 따른 신용장 개설 및 계약 이행보증금의 설정에 관한 업무	3. -----, <u>방위력개선사업</u> <u>중 공통품목</u> -----
4. 전력운영사업의 국제부품·장비 구매계약에 따른 대금지불 및 사후 관리에 관한 업무	4. -----, <u>방위력개선사업</u> <u>중 공통품목</u> -----
5. 전력운영사업의 국외 상업구매 계약에 따른 국외위조부품 관련 사 후조치	5. -----, <u>방위력개선사업</u> <u>중 공통품목</u> -----
⑤ <u>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u>	⑤ <u>국제한도액전력운영계약팀장</u> --
<u>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u>	-----
⑥ ~ ⑦ (생략)	⑥ ~ ⑦ (현행과 같음)
⑧ <u>미래전력사업원가팀장은 다음 사</u>	⑧ -----
<u>항을 분장한다.</u>	-----
1.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분석</u>	1.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u>계획의 수립 및 시행</u>	-----
2.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계산</u>	2.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u>서의 접수 및 분석</u>	-----
3.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검증</u>	3.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u>대상 사업에 대한 검증 의뢰</u>	-----
4.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의 분</u>	4.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u>석 및 예정가격 기초자료의 작성</u>	-----
5.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 심사</u>	5.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u>의뢰 및 확정</u>	-----
6.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u>	6.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계획의 수립 및 시행	-----
7.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가격조사</u>	7.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품목에 대한 가격조사서의 작성	-----
8.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원가에 관</u>	8.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한 통계 기록의 유지 및 자료의 관	-----
리	---
9. <u>미래전력사업본부 내 상업구매</u>	9. <u>미래전력사업본부의</u> -----
에 관한 목표가 산정 및 수입가격	-----
검증	-----

신 · 구 정원 대비 표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2</u>	<u>399</u>	-3
.	.	.	.
.	.	.	.
일반직 계	<u>401</u>	<u>398</u>	-3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7</u>	<u>8</u>	+1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31</u>	<u>130</u>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5</u>	<u>114</u>	-1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71</u>	<u>70</u>	-1
.	.	.	.
.	.	.	.
.	.	.	.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 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 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u>10</u>	<u>9</u>	-1
·	·	·	·
·	·	·	·
·	·	·	·
·	·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1의2]

방위사업청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3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405</u>	<u>402</u>	-3
.	.	.	.
.	.	.	.
일반직 계	<u>404</u>	<u>401</u>	-3
.	.	.	.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u>7</u>	<u>8</u>	+1
.	.	.	.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35</u>	<u>134</u>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3</u>	<u>112</u>	-1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71</u>	<u>70</u>	-1
.	.	.	.
.	.	.	.
.	.	.	.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	<u>10</u>	<u>9</u>	-1

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 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	.	.	.
.	.	.	.
.	.	.	.
.	.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5</u>	<u>361</u>	-4
일반직 계	<u>365</u>	<u>361</u>	-4
·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7</u>	<u>4</u>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8</u>	<u>20</u>	+2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99</u>	<u>98</u>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21</u>	<u>120</u>	-1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8</u>	<u>57</u>	-1
·	·	·	·
·	·	·	·
·	·	·	·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통계전문관·공업 전문관·농업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보건 전문관·항공전문관·시설전문관·전산전문 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2의2]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66</u>	<u>362</u>	-4
일반직 계	<u>366</u>	<u>362</u>	-4
·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7</u>	<u>4</u>	-3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8</u>	<u>20</u>	+2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u>101</u>	<u>100</u>	-1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9</u>	<u>118</u>	-1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u>59</u>	<u>58</u>	-1
·	·	·	·
·	·	·	·
·	·	·	·

수석전문관·행정전문관·통계전문관·공업 전문관·농업전문관·해양수산전문관·보건 전문관·항공전문관·시설전문관·전산전문 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의3] <적용일자 : 2025년 7월 31일까지>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0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361
일반직 계	361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8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0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 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57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 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 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의4] <적용일자 : 2025년 7월 31일까지>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0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362
일반직 계	36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6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0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8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8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 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 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의5] <적용일자 : 2026년 2월 28일까지>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0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361
일반직 계	361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8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20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 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57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공	

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 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2의6] <적용일자 : 2026년 2월 28일까지>

기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0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1항 관련)

총계	362
일반직 계	362
고위공무원단	3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5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9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9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00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8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8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1
행정서기보·세무서기보·관세서기보·통계서기보·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 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6
사무운영서기	1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 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9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44</u>	<u>341</u>	-3
일반직 계	<u>344</u>	<u>341</u>	-3
·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u>3</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8</u>	<u>19</u>	+1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 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 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u>88</u>	<u>86</u>	-2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 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6</u>	<u>115</u>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3의2]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4조제2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계	<u>345</u>	<u>342</u>	-3
일반직 계	<u>345</u>	<u>342</u>	-3
·	·	·	·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4</u>	<u>3</u>	-1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u>18</u>	<u>19</u>	+1
·	·	·	·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 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 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 신사무관	<u>89</u>	<u>87</u>	-2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 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 ·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u>114</u>	<u>113</u>	-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의3] <적용일자 : 2028년 2월 29일까지>

미래전력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0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341
일반직 계	341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 ·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4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6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 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5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 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 ·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 신주사보	53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 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 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10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 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	2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 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8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3의4] <적용일자 : 2028년 2월 29일까지>

미래전략사업본부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국방부령 제000호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 제2조제2항 관련)

총계	342
일반직 계	342
고위공무원단	6
부이사관·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4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수석전문관	18
서기관·과학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5
행정사무관·통계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보건사무관·항공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87
행정주사·세무주사·관세주사·통계주사·공업주사·농업주사·해양수산주사·항공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13
행정주사보·세무주사보·관세주사보·통계주사보·사서주사보·공업주사보·농업주사보·해양수산주사보·항공주사보·시설주사보·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55
행정서기·세무서기·관세서기·통계서기·공업서기·농업서기·해양수산서기·항공서기·시설서기·전산서기 또는 방송통신서기	9

행정서기보 · 세무서기보 · 관세서기보 · 통계서기보 · 공업서기보 · 농업서기보 · 해양수산서기보 · 항공서기 보 · 시설서기보 ·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	2
사무운영서기보	3
수석전문관 · 행정전문관 · 통계전문관 · 공업전문관 · 농업전문관 · 해양수산전문관 · 보건전문관 · 항공전문 관 · 시설전문관 · 전산전문관 또는 방송통신전문관	28

■ 방위사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별표 5]

방위사업청 소속기관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군인 제외)

정원표(제26조제5항 및 제27조제5항 관련)

한국형전투기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4
일반직 계	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	1
행정사무관 · 공업사무관 · 농업사무관 · 항공사무관 · 시설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 항공주사보 · 시설주사보 · 전산주사보 또는 방송통신주사보	1

한국형잠수함사업단(존속기한: 2026년 12월 3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고위공무원단	1